정 정 신 고 (보고)

2026년 11월 13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삼성달러표시미국S&P500인덱스증권투자신탁(USD)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21.7.2

3. 정정 사유
- 투자신탁 명칭 변경(삼성달러표시미국인덱스증권투자신탁(USD)[주식] → 삼성달러표시미국S&P500인덱스증권투자신탁(USD)[주식])
- 환매주기 단축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(VaR 및 위험등급(1 → 2등급) 변동, 재무정보 확정)
- 법령개정사항 반영 등

4.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신탁 명칭	**삼성달러표시미국인덱스증권투자신탁(USD)[주식]**	**삼성달러표시미국S&P500인덱스증권투자신탁(USD)[주식]**
표지	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**1등급**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**2등급**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요약정보		
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 운용전문인력	-	**업데이트**
환매방법	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**4영업일(D+3)**에 공고되는 기준가격	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**3영업일(D+2)**에 공고되는 기준가격

<table>
<tr><th>항 목</th><th>정 정 전</th><th>정 정 후</th></tr>
<tr><td></td><td>을 적용.6영업일(D+5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
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(D+4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7영업일(D+6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</td><td>을 적용.5영업일(D+4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
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(D+3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6영업일(D+5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/tr>
<tr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/td><td>(추 가)</td><td><table><tr><td>변경시행일</td><td>변경사항</td></tr><tr><td>2026.11.20</td><td>투자신탁 명칭 변경(삼성달러표시미국인덱스증권투자신탁(USD)[주식] → 삼성달러표시미국S&P500인덱스증권투자신탁(USD)[주식]), 환매주기 단축, 투자위험등급 변경(1등급(매우 높은 위험) → 2등급(높은 위험))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5. 운용전문인력</td><td>–</td><td>업데이트</td></tr>
<tr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td><td>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–</td><td>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그림 업데이트</td></tr>
<tr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td><td>가. 투자대상
1) 해외 주식(60% 이상):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주권,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,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(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함) 및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,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또는 법 제4조제8항에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주권을 기초로 발행한 것

나. 투자 제한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투자제한의 내용</td></tr><tr><td>동일종목투자</td><td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음.
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금융기관이 할인・매매・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), 파생결합증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(이하 이 목에서 “ 금융기관”</td></tr></table></td><td>가. 투자대상
1) 해외 주식(60% 이상):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(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)으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(이하 "해외주식"이라 한다)

나. 투자 제한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투자제한의 내용</td></tr><tr><td>동일종목투자</td><td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__투자할 수 있음.
나. 지방채증권, 파생결합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제외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・매매・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항 목	정 정 전		정 정 후	
		이라 한다)이 발행한 어음 또는 **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은행・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・증권금융회사・종합금융회사가** 발행한 채권,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**시행령에서** 정한 금융기관이 **지급** 보증한 **주택저당증권)에**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		**융기관이** 발행한 어음 또는 **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가목,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** 발행한 채권, **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**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발행한 채권, **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**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**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** 금융기관이 **지급을** 보증한 **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 예탁하여 취득한 채권**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
	(신 설)		**파생상품매매**	**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**
	동일종목투자	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(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)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**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**	동일종목투자	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(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제외)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**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**
	계열회사 투자한도 초과	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**초과일부터 3월**	계열회사 투자한도 초과	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**(해당 증권을 추가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)** 위의 계열회사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	<table><tr><td></td><td>**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**</td></tr></table>	<table><tr><td></td><td>가 발행한 주식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**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.**</td></tr></table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**6등급 중 1등급**에 해당되는 **매우 높은 위험**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- 과거 3년 일간 수익률로 산출한 97.5% VaR는 **33.37%** 이며, 이는 <시장위험등급 기준표> 기준 위험등급 부여시 **2등급**에 해당합니다. 본 펀드는 외화표시집합투자기구로 수익구조 등이 특수하여 위험등급 상향조정 대상펀드에 해당되어 **1등급**을 부여하였습니다.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**6등급 중 2등급**에 해당되는 **높은 위험**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 - 과거 3년 일간 수익률로 산출한 97.5% VaR는 **28.19%** 이며, 이는 <시장위험등급 기준표> 기준 위험등급 부여시 **3등급**에 해당합니다. 본 펀드는 외화표시집합투자기구로 수익구조 등이 특수하여 위험등급 상향조정 대상펀드에 해당되어 **2등급**을 부여하였습니다.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	나. 환매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4영업일(D+3)**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**제6영업일(D+5)**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2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5영업일(D+4)**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**제7영업일(D+6)**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.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1)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**제4영업일 전일** (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**제5영업일 전일**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	나. 환매 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3영업일(D+2)**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**제5영업일(D+4)**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2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: 환매청구일로부터 **제4영업일(D+3)**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**제6영업일(D+5)**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. (6)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1)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**제3영업일 전일** (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**제4영업일 전일**)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 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**업데이트**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**업데이트**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**업데이트**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)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합니다. ②신탁업자의 변경(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)**(추 가)**	나. 수시공시 (1)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1)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__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합니다. ②신탁업자의 변경(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) **다만,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손실보상기간 동안의 신탁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,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**
	⑥집합투자업자의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,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**(추 가)**	⑥집합투자업자의 합병・분할・분할합병,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. **다만,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, 집합투자업자는 손실 보상기간 동안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,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.**
	(2) 수시공시 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결정 및 그 사유 **(추 가)**	(2) 수시공시 2)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결정 및 그 사유 **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 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**
	5) 투자설명서의 변경. **다만,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,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**	5) 투자설명서의 변경. **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** **가.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** **나.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** **다.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** **라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**
	7)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**(추 가)**	7)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**(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・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)**